

# 17. 租稅減免規制法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4,869號 1995. 12. 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중 “제1항”을 “제1항 각호”로, “업종별 자산총액”을 “자산총액”으로 한다.

①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어업·도매업·소매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한다)이 내일 것

2.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이내일 것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을 경영

하거나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에 한한다)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중소기업해당사업”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제10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제48조 제9호 단서”로, “제37조 제1항”을 “제36조 제1항 제7호”로 한다.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5항 및 제6항(중전의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중소기업을 말한다.

⑤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

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⑥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함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6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9항(중전의 제6항)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 2”를 “별표 10”으로 한다.

⑦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송업(화물 운송업에 한한다)·화물취급업·보관 및 창고업·터미널시설 운영업(화물 터미널 시설 운영업에 한한다)·화물운송 대행업·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7조 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제1호 중 “제조업과 제1항”을 “법 제7조 제1항”으로, “제70조”를 “제55조”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4.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조립·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5. 금융·보험업(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법인에 한한다)
6. 부가통신업
7. 연구 및 개발업
8. 방송업
9. 물류산업
10. 가스제조 및 공급업
11. 무역업

제9조 제1항 중 “제7호”를 “제9호”로 한다.

제10조 제4항 제2호 중 “제10조 제3항”을 “제7조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엔지니어링사업

제14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3항(중전의 제2항)중 “선박법에 의한 선박(준설선등 특수선박과 수상구조물을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동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②법 제16조 제1항 및 법 제17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선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선업자”라 함은 각각 조선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선산업 및 조선업자를 말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중 “제14조 제2항”을 “제14조 제3항”으로, “선박·기계·신발”을 “기계·기구, 신발”로 한다.

제22조 제1항 제3호 중 “내용연수” 다음에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를 말하되, 신고내용연수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삽입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 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제25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 제7호(중전의 제6호)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항 제8호(중전의 제7호)중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 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시설

9.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제1항 제6호의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8조 제2항 제2호 중 “제104조”를 “제82조”로 하고, 동조 제4항 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나목 중 “제45조”를 “제97조”로 하고, 동조 제6항 제2호 단서중 “제170조 제4항”을 “제166조 제4항”으로 하며, 동조 제11항 중 “제6조 제5항”을 “제6조 제8항”으로 하고, 동조 제13항 중 “제31조 제5항”을 “제31조 제6항”으로 한다.

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동법 제103조의 금액을 합한 금액  
제2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어업
2. 운수업
3. 도매업 및 소매업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산업  
가. 부가통신업  
나. 연구 및 개발업  
다. 방송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마.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30조 제1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3항(중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②법 제33조 제1항에서 “제조업, 유통·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제조업
2. 물류산업
3. 제2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

③법 제33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전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단위별로 양도하고,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전환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전환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전환전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전환전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사업장을 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전환전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장을 신설·준공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제30조 제4항 내지 제6항(중전의 제2항 내지 제4항), 제8항(중전의 제6항) 및 제9항(중전의 제7항)중 “공장”을 각각 “사업장”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제1호(중전의 제2항 제1호)중 “중소기업이”를 “중소사업자가”로 한다.

제30조 제5항(중전의 제3항) 본문중 “제2항 제1호”를 “제4항 제1호”로 하고, 동조 제6항(중전의 제4항) 본문중 “제2항 제1호”를 “제4항 제1호”로 하며, 동항 제2호 나목중 “제23조 제2항 각호 및 동법 제45조”를 “제95조 제2항·제97조 및 제103조”로 하고, 동항 제3호 나목중 “제3항 제2호”를 “제5항 제2호”로 하며, 동조 제7항(중전의 제5항)중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5항 또는 제6항”으로, “제1항 제2호”를 “제3항 제2호”로 하고, 동조 제8항(중

전의 제6항) 제1호 중 “제1항 제2호”를 “제3항 제2호”로 하며, 동항 제2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하고, 동조 제9항(중전의 제7항) 제1호 중 “제1항 제1호”를 “제3항 제1호”로 하며, 동항 제2호 중 “제1항 제2호”를 각각 “제3항 제2호”로 한다.

제3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 2(영세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33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세중소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일 것
2.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전 3년 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자일 것. 이 경우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말한다.

②법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2. 금융기관의 부채감소액이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③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감소액은 토지등의 양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총액(당좌대월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금융부채총액”이라 한다)에서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부채상환계획서상의 금융부채의 예정감소액에 의하

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법 제3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할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33조의 2 제2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⑥법 제33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8조 제8항 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4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원의 경매 또는 금융기관의 저당권 실행의 경우

3. 법 제31조 내지 제33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인전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또는 공장의 지방이전의 경우

⑦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

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리령이 정하는 부채상환명세서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감소액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에는 부채상환 계획서. 이 경우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그 부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부채상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 3(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법 제33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토지등의 양도일(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날을 말한다)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②법 제33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작성하는 재래시장구조개선지원계획에 따라 10인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내에 재래시장내의 종전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2. 재래시장내의 종전사업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새로운 사업장을 새로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 내에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③법 제33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라 함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를 말한다.

④법 제33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유통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유통단지내의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사업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통단지내의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⑤법 제3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종전사업장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2. 새로운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장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사업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총리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⑦법 제33조의 3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할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2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장을 준공하거나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2.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4.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을 처분한 때에는 감면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새로운 사업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⑧법 제33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0조의 2 제6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법 제3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2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이 경우 제2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장을 준공하거나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제1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2항 및 제3항(종전의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법 제34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환을 한 자”라 함은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전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자로서 제조업 또는 광업으로 사업을 전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업종을 양도 또는 폐지하는 경우

2. 종전의 업종을 양도 또는 폐지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③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로 기존의 업종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이 추가한 업종의 매출액이 당해 기

간내에 총 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감면기간중에 기존업종의 매출액이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새로이 추가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과세연도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중 “인정하는 합병”을 “인정하는 합병과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합병”으로 한다.

제3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 2(금융기관의 합병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①법 제 4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4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합병전에 각 금융기관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영업장, 연수원, 직원복지시설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자산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용도의 자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자산을 말한다.

③법 제4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제2항 중 “제30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0조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제42조 제4항 중 “제30조 제4항”을 “제30조 제6항”으로, “공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제51조 제1항 산식 및 동조 제2항 중 “500만원”을 각각 “1천200만원”으로 하고, 동조 제4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9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5항(중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52조 제4항 및 법 제5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결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⑤법 제52조 제4항 및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5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제52조의 제목 중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54조 제1항 제1호 중 “직할시”를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로, “1년”을 “3년”으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1년”을 “3년”으로 하며, 동조 제2항 본문 중 “경작한 거주자”를 “경작한 자”로 하고, 동항 제1호 중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을 “시·군·구(자치구인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동항 제2호 중 “시·구·읍·면”을 “시·군·구”로 하고, 동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54조 제5항 중 “제53조”를 “제162조”로 하고, 동조 제6항 중 “제5조 제6호 마목·차목”을 “제89조 제2호·제4호”로, “제59조의 3 제1항 제5호”를 “제59조의 3 제1항 제2호”로 한다.

제55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제2호 중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의 규정”을 “유통단지개발촉진법”으로 하며, 동항 제4호 중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지법”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제6호 중 “제5조 제6호(마)목 및 (차)목”을 “제89조 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제56조의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과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제59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61조 제3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
3.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

제6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라 함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중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경주보문관광단지
2. 해남화원관광단지

③법 제64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 함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62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 조성사업시행자

제63조 제4항 중 “제20조”를 “제19조”로 하고, 동조 제6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건설등록업자(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한 때
2.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아파트를 건설한 경우를 제외한다)

- 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 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용검사에정일(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용검사에정일을 말한다) 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

제63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8항 중 “계산”을 “계산 및 징수등”으로 하며, 동조 제9항 제1호 중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삭제한다.

⑦법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를 제6항 각호의 기간내에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당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

- 2.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폐업(해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 3.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신축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제64조 제1항 제1호 중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를 “개인”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 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 2(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특

례) ①법 제6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995년 10월 31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2.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②1995년 1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6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미분양주택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법 제6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동항 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

택확인서 사본

2. 미분양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 (1997년 1월 1일 이후 취득등기하는 분에 한한다)

④법 제6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제2항 중 “제30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0조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제71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의교협회
2.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제7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 2(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법 제7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면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74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문화시설을 이전하여 새로운 문화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시설”이라 한다)을 개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시설을 새로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

②법 제7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은 종전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에 신시설의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의 취득가액이 종전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상의 신시설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③법 제7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내국인이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신시설을 취득하거나 준공하여 개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세액 전액

2.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이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3. 신시설을 개관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시설을 폐관한 때에는 면제세액 전액

4. 신시설을 개관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시설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신시설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법 제74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28조 제8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은 “신시설”로 본다.

⑤법 제7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종전시설의 양도일 소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전계획서

⑥법 제7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은 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시설을 취득하거나 준공하여 개관한 때에는 그 개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에는 종전시설을 양도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 제1항 본문중 “제80조”를 “제80조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감면세액”을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8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76조의 2 제3항 본문중 “제144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으로 한다.

제76조의 5 제3항 중 “제194조의 2 제2호”를 “제190조 제2호”로 한다.

제78조 제3항 중 “제193조 제1항”을 “제164조 제1항”으로 한다.

제7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 2(가계생활자금저축의 범위등)

①법 제81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통장으로 거래하는 저축을 말한다.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일 것
2. 저축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1천200만원 이하일 것
3. 1세대 1통장일 것
4. 가계수표 또는 신용카드이용대금의 결제가 가능한 통장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계생활자금저축의 취급기관은 당해 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도해지한 분에 대하여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가계생활자금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 중 “제20호”를 “제5호”로 한다.

제88조의 3을 삭제한다.

제88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 4(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①법

제92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이라 함은 제6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

을 취득(2주택 이상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주택에 한하며, 1996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자가 당해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년 1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의 취득후 당해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거나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일·매매계약의 해지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

1.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2.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지원하는 대출금

②법 제92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92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에의 해당여부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④법 제9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또는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관할세무서장(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축산업의 범위) 법 제9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96조 제3항 중 “위탁영농회사가”를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97조 제5항 전단중 “제189조”를 “제163조”로 한다.

제102조 제2항 전단중 “특별소비세”를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하고, 동항 후단중 “제10호 내지 제12호”를 “제12호 내지 제14호”로 하며, 동항 제9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10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내지 제14호로 하며, 동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캠퍼더

11. 가스오븐렌지

제102조 제3항 전단중 “특별소비세”를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하고, 동항 후단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며, 동조 제6항중 “제2항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로 한다.

제104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4항 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며, 동조 제5항 중 “제6조 제6항”을 “제6조 제9항”으로 한다.

3.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간의 합병

제105조 제2항 중 “제26조 제1항”을 “제96조 제1항”으로, “제20조”를 “제19조”로 한다.

제106조 제3항 제1호 중 “제76조”를 “제57조”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제78조”를 “제58조”로 하며, 동조 제4항 제6호 중 “제118조 제1항 제3호”를 “제118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제3호”로 한다.

제107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1조·법 제33조·법 제33조의 2·법 제33조의 3·법 제35조·법 제38조·법 제40조의 2·법 제67조·법 제72조 내지 법 제74조·법 제74조의 2·법 제75조 제1항·법 제76조 및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2항 제1호·제3

호·동조 제5항 및 동조 제7항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제110조의 제목중 “종합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를 “종합한도액 계산”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률”을 “법 제119조 제3항 및 법률”로 하며, 동조 제1호 가목중 “제119조”를 “제119조 제1항”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법률”을 “법 제119조 제2항 및 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란 나목·동표 제2호란 및 제3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비교란의 제1호중 “인천직할시장”을 “인천광역시”로, “인천직할시”를 “인천광역시”로 하며, 동란의 제4호중 “광주직할시장”을 “광주광역시”로 한다.

나. 인천광역시(강화군 및 용진군을 제외한다)

2. 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그 관할구역(기장군 및 달성군을 제외한다)
3.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그 관할구역

별표 2의 제8호란중 “유전자산업”을 “생물산업”으로 하고, 동란에 ④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화학물질

별표 2의 제11호란에 ③ 내지 ⑥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
- ④기계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⑤전기, 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⑥비파괴검사업

별표 3의 제2호란 마목중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표 제5호란 나목 및 제6호란 다목중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표에 제1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수탁기업체협회의 육성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탁기업체협회의에 대한 출연금
-----------------	---

별표 4의 제목중 “기술·인력개발세액공제”를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로 하고, 동표 제1호란 바목 및 제2호란 가목의 ④중 “중소기업진흥법”을 각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표 제1호란 바목중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9의 제목중 “제6조 제2항”을 “제6조 제4항”으로 하고, 동표 제1호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및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의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8조의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4조 제1항 및 제6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소비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창업중소기업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

다.

제6조(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내용연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한 시설을 개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전의 업종을 양도·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금융기관합병에 관한 적용례) 제37조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환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 사업을 전환하였거나 전환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④제79조의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저축으로서 제79조의 2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통장으로 거래하는 저축 가입자가 1996년 3월 31일 이전에 총리령이 정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지정신청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당해 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계생활자금저축의 취급기관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계생활자금저축명세서를 이 영 시행일에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88조의 4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1995년에 공제대상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1995년도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을 때까지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범위(제6조 제2항 관련)

1.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본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2.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계열화품목의 사업
3.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신기술의 사업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고시한 국내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사업
4.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을 기업화하는 사업
5.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
6.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 및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의 성과 또는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7. 별표 2의 사업
8.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창업자(당해 출자의 지분이 창업개시일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심의회가 정하는 일정 기간동안 당해 창업자의 총발생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가 영위하는 사업
10. 통상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촉진과 부품 및 소재의 수입대체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심의회심의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

##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5. 12. 29, 법률 제5038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각종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보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각종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연구개발업·종합유선방송업 및 창고업 등을 포함하고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준으로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외에 소유·경영의 독립성을 추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보완함(영 제2조 제1항).
- 나.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에 종합유선방송업·물류산업과 가스제조 및 공급업을 추가하고,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의 범위에 종합유선방송업 및 물류산업을 추가함(영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
- 다. 제조업·물류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와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업종제한없이 모든 중소기업자로 함(영 제30조 제1항 및 제30조의 3 제1항).
- 라.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30퍼센트가 감면되는 영세중소사업자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자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한 자로 함(영 제30조의 2 제1항).

마.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시이상 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 종전에는 그 편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함(영 제54조 제1항).

바. 20퍼센트의 양도소득세 특례세율과 세액공제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 국민주택의 범위를 1995년 10월 31일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미분양 사실을 확인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함(영 제64조의 2 제1항).

사. 이자소득에 대하여 10퍼센트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의 범위를 신용카드 또는 가계수요의 결제가 가능한 계좌로서 불입한도 1천200만원 이하의 1세대 1통장으로 함(영 제79조의 2 제1항).

〈법제처 제공〉

**잘 지은 건물하나 평생동안 나의 명함**